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2892호
- 다. 제출일자: 2021. 10. 15
- 라. 회부일자: 2021. 10. 20

2. 제 안 사 유

-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수칙 미준수 등을 위한 단속 활동을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간 지속적으로 업무 혼선이 초래되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함.
이에, 경찰청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되어 본 조례에 단속업무를 규정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본 조항을 개정함.
- 청원경찰 직무범위 관련 「청원경찰법」 및 조례의 상충에 따라,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조례의 청원경찰 단속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로 개정함(안 제19조제1항).

나.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9조제3항).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9. 9.~9. 29.)결과: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찰청이 청원경찰의 직무를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한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한강공원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단속업무를 제외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 제19조는 한강공원 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주체를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로 명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8조에서도 청원경찰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최근까지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은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청원경찰과 합동으로 수행하였음.
- 그러나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를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구역 내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단속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타당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이로 인해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2021년 6월 경찰청은 청원경찰의 편법운용(경비구역을 벗어나 경비업무 이외의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등)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경비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따라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경비업무 이외의 단속업무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
- 따라서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청원경찰의 단속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률과 조례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한강공원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동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무 인력을 확보하여 단속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채용된 한강공원 청원경찰 역시 「청원경찰법」에 규정된 본연의 업무인 한강공원 내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부여 역시 필요할 것임.